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발간과 시사점

1. 들어가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전면 개편된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7개월간 의견수렴 및 수정반영 절차를 거친 뒤 지난 7월 15일에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최종본(이하 “통합 안내서”)이 발간되었습니다.

위 안내서는 기존에 발간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20.12.)」의 일부 내용이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담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2023년 이후 개정된 사항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에 발간되어 운영되던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 3.)」,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2020. 12.)」,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2020. 12.)」,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0. 12.)」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통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주요 내용 ①: 동의 외 근거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구체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고 정했던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불가피하게”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실무 현장에서는 동의 기반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관행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동의를 남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Related Areas

Data & Technology

IP & Technology 융합

Contact

김선희 변호사
02-528-5838
kimsh@yulchon.com

허승진 변호사
02-528-5567
sjheo@yulchon.com

안다연 변호사
02-528-5254
dyahn@yulchon.com

배상호 고문
02-528-6110
shbae@yulchon.com

이기원 변호사
02-528-5267
kiwonlee@yulchon.com

김시온 변호사
02-528-5893
sionkim@yulchon.com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안내서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반영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령상 의무 이행, 정당한 이익의 달성 등을 근거로 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각 처리 근거별로 필요한 사전 조치와 고려사항, 그리고 관련된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동의를 받아온 동의내용에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은 삭제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 없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3항)**이 안내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기존에 운용 중이던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 항목별로 처리 목적에 대해 **적법한 근거와 그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방식을 점검**하고, 앞서 본 조치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②: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에 관한 원칙 추가

통합 안내서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과 정당성을 강화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내서에서는 2024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명시되었던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으로서 정보주체의 명시적이고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사항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 안내서에서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압이나 불이익 등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제한하는 조건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동의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 외의 다른 처리근거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필수동의를 받을 경우 오히려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제한할 소지는 없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정보주체가 동의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 동의 대상 항목을 분리하여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의하여야 할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통합 안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의를 받는 방법 개정에 따른 조치'의 주요 원칙 및 그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 인터넷 쇼핑몰이 고객으로부터 구매상품 주문을 받아 결제-배송-AS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주소, 연락처, 결제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 회의 참석 전문가 등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름, 계좌정보,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수당 지급에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 동의 원칙 준수	- 쇼핑몰 사업자가 주소, 연락처, 결제정보 등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외에 계약과 관계 없는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고객의 결혼여부, 직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병원에서 온라인 진료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진료계약과 관계 없는 임상실험 등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계약 관련 개인정보와 그 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동의 고지사항에서 계약 관련 개인정보 삭제	-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상품구매-결제-배송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그 외에 계약내용과 관계 없는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 필수동의 방식으로 운영 가능	-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헬스케어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렌트카업체에서 자동차 대여서비스를 위해 운전면허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결국,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위 안내서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여부 결정이 가능하도록 동의 절차를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주요 내용 ③: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추가 기준 제시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관한 판단 기준을 미리 공개할 것이 요구되었다가, 2023년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을 할 뿐인 경우에는 이러한 공개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합 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실제 사례들이 보강되어,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통합 안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정보주체가 택시 중개서비스 앱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택시 중개서비스 앱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택시 호출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택시기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 사업자가 상품 중개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제3자인 상품 판매자에게 배송 등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채용 플랫폼 사업자가 구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입사 지원하는 기업에 정보주체의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 화장품을 판매한 소매점이 소비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연락처 정보를 화장품 제조회사가 실시하는 소비자 보호 목적의 리콜 실시를 위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고객이 가게에서 계산한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고객이 실수로 그 물건을 가져간 경우 가게주인이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하여 물건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기업·기관 등이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경력증명을 위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력증명서 발급기간이 경과한 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추가 이용·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통합 안내서의 기타 내용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가 개정되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8조 제2항 제10호가 추가되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합 안내서에서는 위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이 제22조의2로 신설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방법, 클라우드서비스 등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는 사업모델의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 영업양도·합병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가 이전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 역시 다수 보강되었습니다.

6. 시사점 및 통합 안내서 활용을 위한 실무 제언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도입된 새로운 내용들이 충실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세한 기준이 부족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영역들에서의 판단 기준과 사례들이 보강되었습니다. 위 안내서는 앞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일차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년간 추진해왔던 '필수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의 정책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은 이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근거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모든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집체계를 유지할 경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율촌의 Data&Tech팀은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변화 및 당국의 정책 흐름에 맞춰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의 내용 및 동의 중심의 처리관행 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체계에 대한 점검, 개선 등 전략 마련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